

[WTO/FTA 모의재판에 관한 양해]

- WTO/FTA 모의재판은 "WTO 모의재판 Steering Committee"(이하 "ST"로 약칭)와 집행위원회 체계로 운영됨.
- 학회정관상 WTO모의재판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로서 ST에서 설정한 기본방향에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함.
- 집행위원회의 장은 당연직으로 ST에 참석함.
- 집행위원회 장의 임기는 3년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음.
- 정관상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취지와 양해하에 해석, 운용되도록 함.

이 양해는 신희택, 성재호, 김대원, 정찬모 간의 논의를 정찬모가 정리한 것이며
거명된 사람이 이 양해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.